

ITS	절 차 서	문 서 번 호	ITS-P931
		Edition/Rev.	3 / 1
	인증정지, 취소, 인증범위 축소	페 이 지	1 / 6

1. 목적

본 절차서는 인증의 정지, 취소 및 인증범위 축소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인증을 원활하게 유지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발급된 인증 정지, 취소 및 인증범위 축소 업무에 대하여 적용 한다.

3. 용어정의

3.2 인증정지

인증조직의 경영시스템이 심각하게 인증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조직이 자발적으로 인증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인증의 효력을 중단하는 것.

3.3 인증취소

인증조직이 인증등록을 포기하여 인증서를 반납하거나, 인증정지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해결하지 못한 경우 인증등록을 무효화하는 것.

3.4 인증범위 축소

인증정지원인이 되었던 일부 인증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해결하지 못한 경우, 인증범위를 일부를 축소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인증부서장

- (1) 인증조직에게 인증의 정지, 취소 및 인증범위 축소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전달
- (2) 월 1회 이상 인증정지, 취소 대상기업의 목록을 작성하여 인증조직 및 인정기관에 통보
- (3) 인증조직에게 인증의 정지, 취소 및 인증범위 축소 사유 발생시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 실시
- (4) ITS의 귀책사유로 조직의 인증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인증조직과 협의하여 협약을 맺은 타 인증기관에 인증승계를 위한 제반 업무 수행
- (5) 협약을 맺은 타 인증기관 관리

4.2 검증부서장

- (1) 인증정지·취소 등에 대한 인증결정권자에게 검토 의뢰

4.3 인증결정권자(검증심사원)

- (1) 인증정지, 인증취소 및 인증 정지·해지 여부 결정

5. 업무절차

5.1 인증정지

인증조직의 인증정지(인증범위 전부정지, 인증범위 일부정지) 및 이에 대한 해지절차는 다음과 같다.

5.1.1 인증부서장은 “[붙임 1] 인증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인증조직이 발생했을 시 그 사실을 검증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ITS	절 차 서	문 서 번 호	ITS-P931
		Edition/Rev.	3 / 1
	인증정지, 취소, 인증범위축소	페 이 지	2 / 6

5.1.2 검증부서장은 ‘인증결정 및 인증등록’절차에 따라 인증결정권자(검증심사원)에게 검토 의뢰하여 인증정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1.3 인증부서장은 검토결과가 인증정지로 결정된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인증정지 공문을 작성하여 인증부서장에게 보고 후, 해당인증조직에 통보한다.

이때, 인증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인증정지의 사유 및 해지 절차

2) 인증정지 기간

3) 인증정지 후, 해당조직이 인증상태에 대해 언급한 모든 홍보물의 사용 중지 및 이를 위반 시 법적 조치에 관한 사항

5.1.4 인증정지에 관한 정보는 인증부서장 주관하에 ITS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공개적으로 접근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5.1.5 인증부서장은 인증정지 기간 동안 해당 인증조직의 시정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인증조직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인증심사운영” 절차에 따라 해당 심사원을 지정하여 특별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1.6 해당심사원은 특별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인증부서장은 이를 검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1.7 검증부서장은 “인증결정 및 인증등록” 절차에 따라 인증결정권자(검증심사원)에게 검토 의뢰하여 인증정지의 해지 또는 인증취소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은 본 절차서 5.2항에 따른다.

(1) 인증정지가 해지된 후 사후관리심사 주기는 기존의 주기를 그대로 유지한다.

(2) 인증정지해지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은 최초인증시의 인증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1.8 인증부서장은 인증결정위원회 검토 결과를 해당인증조직에 통보한다.

5.1.9 상기와 연계하여, 인증부서장은 중대한 사고나 법규위반과 같이 관할관서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 인증조직이 제공하거나 특별심사 도중 심사팀이 직접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이 안전보건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심각하게 실패한 것이 실증된 경우 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취할 조치를 결정하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인증기관과 조직 간의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5.2항에도 확대 적용된다.

5.2 인증취소 및 인증범위 축소

인증조직의 인증취소 및 인증범위 축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5.2.1 인증부서장은 아래 “[붙임 2] 인증취소 및 인증범위축소 기준”에 해당하는 인증조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사실을 검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2.2 검증부서장은 “인증결정 및 인증등록” 절차에 따라 인증결정권자에게 검토 의뢰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범위 축소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2.3 인증부서장은 인증결정권자의 검토결과가 인증취소 또는 인증범위축소로 결정된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문을 작성하여 해당 인증조직에게 발송 한다

1) 인증취소 및 인증범위축소 사유 및 인증서 회수 요청에 관한 사항

2) 인증취소 및 인증범위축소 예정일

ITS	절 차 서	문 서 번 호	ITS-P931
		Edition/Rev.	3 / 1
	인증정지, 취소, 인증범위축소	페 이 지	3 / 6

- 3) 인증취소 및 인증범위축소 시 공표 절차(KAB 인정기관 통보 등)
- 4) 인증취소 후, 인증 재취득은 최초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한다는 안내
- 5) 인증범위축소 분에 대한 확대 필요시 인증범위 확대 절차에 따른다는 안내
- 6) 인증효력 상실 후, 해당 인증조직이 인증상태에 대해 언급한 모든 홍보물의 사용 중지 및 이를 위반 시 법적 조치에 관한 사항

ITS	절 차 서	문 서 번 호	ITS-P931
		Edition/Rev.	3 / 1
	인증정지, 취소, 인증범위축소	페 이 지	4 / 6

5.2.4 상기의 인증취소에 관한 정보는 인증부서 주관하에 ITS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공개적으로 접근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5.2.5 인증부서장은 인증실적 보고 시 동 사항을 인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 범위를 수정한다.

6. 인증기관(ITS) 인정취소 및 인정정지 시 대비 절차

ITS의 귀책사유로 인증조직의 인증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 절차는 “인증기관 배상책임 관리” 절차에 따른다.

7. 기록관리

7.1 인증반납공문

7.2 인증효력정지공문

8. 관련문서

8.1 인증결정 및 인증등록

8.2 인증기관 배상책임 관리

8.3 위원회 운영

8.4 인증심사 운영

8.5 인증절차안내

9. 부칙

※ [붙임 1] 인증정지 기준

※ [붙임 2] 인증취소 및 인증범위축소 기준

ITS	절 차 서	문 서 번 호	ITS-P931
		Edition/Rev.	3 / 1
	인증정지, 취소, 인증범위축소	페 이 지	5 / 6

[붙임 1] 인증정지 기준

구분	인증 정지 기준
인증범위 전부정지	(1)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관리심사를 수심하지 않아 인증정지에 대한 예고공문을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인증심사결과 인증시스템이 적용표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인증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3)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4) 인증제도,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인증조직이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 현장확인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재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재 발생된 경우 (6) 인증마크의 오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7) 인증심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인증계약에 따른 조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9)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10)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11) 조직 개편이나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12) ITS와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인증조직이 자발적으로 인증정지를 요청한 경우 (14) 중부적합의 경우, 90일 이내에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15) <u>관할관서로부터 행정처분/개선명령(중대 사고 또는 법규위반)을 받았으나, 관할관서의 요청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시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을 경우</u>
인증범위 일부정지	(1) 일부 인증표준, 인증범위, 인증사업장에 대하여 1년간 시스템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 (2) 인증범위 생산제품이 일부 1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붙임 2] 인증취소 및 인증범위축소 기준

구분	인증취소 및 인증범위축소 기준
인증 취소	(1) 인증정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ITS의 판단에 따라 문서화되고, KAB 인정기관 및 관련 조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취소 유예될 수 있으며 관련 근거 사본을 인증조직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인증조직이 공식문서로 인증서의 포기를 원하는 경우 (3)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4)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 (5) 인증조직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6) 인증서 회수 요청 시 1개월 이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인증 범위 축소	(1) 인증범위의 일부정지 후 2개월 이내에 정지사유가 시정조치 되지 않았을 경우